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주의] 고객님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 핵심(요약)설명서

○ 이 핵심(요약)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 본 설명서에서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이란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
 - * 파생상품: 주식, 채권, 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
 - 장내파생상품은 ①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고, ②한국거래소에 의해 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 일일정산 및 반대매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유사상품과의 비교표 >

구 분	장내파생상품	해외장내파생상품 (해외선물·옵션)	해외장내파생상품 (FX마진거래)	장외파생상품	ELW
법적성격	파생상품(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증권
거래장소	한국거래소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장외시장(표준화)	장외시장(맞춤형)	한국거래소
주요상품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미니나스닥100 선물 등	이종통화쌍 (EUR/USD 등)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등	코스피200 ELW 등
거래방법	공개호가방식/전자거래시스템			거래당사자간 계약	공개호가방식/ 전자거래 시스템
신용위험	한국거래소가 계약이행 보증	해외청산기관이 계약이행 보증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 존재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 존재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
증거금	증거금 납입			증거금 납입	기본예탁금 납입
일일정산	일일정산 시행			일일정산 없음 (필요시 일정주기 정산)	일일정산 없음 (만기 정산)
반대매매	반대매매 시행			일부 시행	없음
특징	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 등 표준화	환율변동위험 수반. 각국 거래소별 거래 조건 등 상이	환율변동위험 수반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만 가능	발행주체에 따라 발행조건 다양

■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발생가능한 불이익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증거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응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익 사례(콜옵션 손익계산의 예)

- 행사가격 300p인 코스피200 콜옵션을 프리미엄 3p에 1계약 매수/매도한 경우

구분	만기 전 반대거래시 (반대거래 가격 = 4p)	만기 청산 시	
		기초자산 = 305p	기초자산 = 295p
옵션 매수자	$(4p-3p) \times 25\text{만원} \times 1\text{계약} = 25\text{만원}$	$(305p-300p-3p) \times 25\text{만원} \times 1\text{계약} = 50\text{만원}$	권리포기
옵션 매도자	$-(4p-3p) \times 25\text{만원} \times 1\text{계약} = -25\text{만원}$	$-(305p-300p-3p) \times 25\text{만원} \times 1\text{계약} = -50\text{만원}$	$3p \times 25\text{만원} \times 1\text{계약} = 75\text{만원}$

* 거래승수

▶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 당사는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 이 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 투자위험 등급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위험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유동성위험	중도매도(환매불가) []	중도매도(환매)시 비용발생 []	중도매도(환매)가능 [○]
-------	----------------	--------------------	------------------

▶ 유의사항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A. **일반금융소비자(개인·법인)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일반 개인금융소비자는 **사전교육(최저 1시간 이상), 모의거래과정(최저3시간 이상)**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선물(코스피200변동성지수 제외), 옵션매수시 1천만원 이상, 그 외 모든 거래는 2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

** 일반개인투자자가 변동성지수선물 및 옵션매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경험(계좌개설 후 미체결약정 10거래일이상 보유)도 필요 합니다

Q2. 위탁증거금의 부족으로 추가 예탁이 필요하나 기한까지 불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 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응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위탁증거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위탁증거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요?

A. **현금, 대응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납입 가능합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 (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 > 고객센터/FAQ > 고객의 소리), 본사 민원 담당 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II. 상품개요 및 특성

장내파생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자산

▶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금, 돈육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구분	상품내역
주가지수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KRX3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코스닥150위클리옵션 등
상장지수	ETF 선물 등
변동성지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개별주식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등
채권/금리	3년, 5년, 10년, 30년 국채선물 등
통화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유로선물 등
Commodity	금선물, 돈육선물 등

나. 계약단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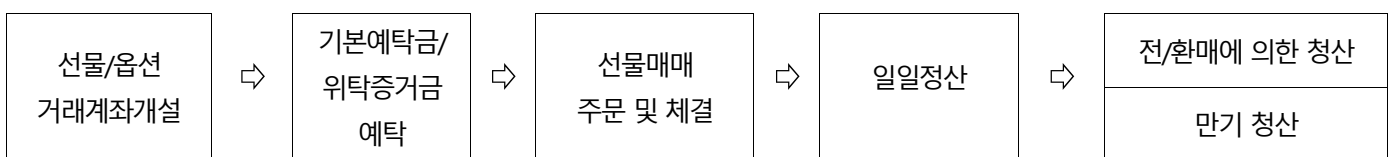
▶ (계약단위) 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가격표시방법)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 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 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제월 혹은 결제주 및 최종거래일)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 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혹은 결제주)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월)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혹은 결제주)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거래절차



라. 장내파생거래의 특징

- ▶ 장내파생상품거래는 ①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 단위, 가격제한폭 등)되어 있고, ②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 일일 가격제한

- ▶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 단계) 가격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 보다 조기 개장한 시간 동안(08:45~09:00)에는 1 단계 가격제한만 적용)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주식파생상품		순차적 적용		
		1 단계	2 단계	3 단계
지수상품	코스피 200 선물·코스닥 150 선물· 섹터지수선물·KRX300 선물 등	±8%	±15%	±20%
	코스피 200 옵션· 코스피 200 위클리옵션· 코스닥 150 옵션· 코스닥 150 위클리옵션 등			
주식상품 등	변동성지수선물 등	±30%	±45%	±60%
	주식선물 등 주식옵션 등	±10%	±20%	±30%
	ETF 선물 등			

*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 거래 시 주식파생상품 가격제한비율은 1 단계만 적용되며 그 외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준종목 가격급변 :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 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직전 거래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직전 거래일 및 해당 거래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 200 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② 주식 CB 발동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 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 단계로 확대
- ** 코스피 200 선물(코스닥 150 선물) 하락방향, 코스피 200 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 200 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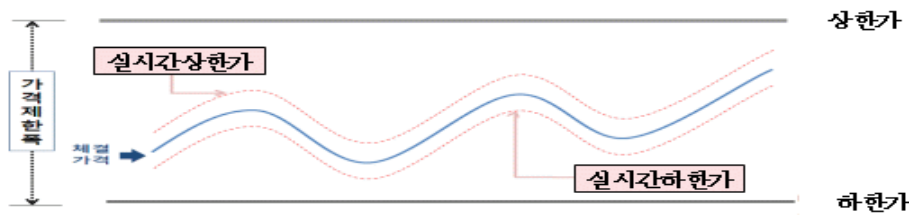
<예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 * **(가격급변의 경우)** 선물 기준종목이 13:05:00 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 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 초에 필요적중단(주식 CB)이 발생하여 13:29 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 확대**
- * **(주식 CB 발동 경우)** 코스피 200 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 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하여 CB 가 발동하는 경우
⇒ **20 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 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 (지수 17% 하락 → 파생 가격제한폭 -20%)**

③ 실시간가격제한제도

: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tick)**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야간거래 시에는 장중 직전 체결가격과의 가격 연속성을 고려하여 정규거래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



-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 * **(적용상품)**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 주식선물(적용 제외 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등
- *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

바. 장내파생거래의 손익구조

▶ **(선물거래)** 선물거래의 손익은 거래 진입시점과 청산시점의 선물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상승) **선물매수자 이익, 선물매도자 손실**
-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하락) **선물매수자 손실, 선물매도자 이익**
- √ (선물매수 손익 계산산식)

$$\begin{aligned} \text{선물매수자} &= [(\text{청산가격}) - (\text{진입가격})] \times \text{거래승수} \times \text{계약 수} \\ \text{선물매도자} &= [(\text{진입가격}) - (\text{청산가격})] \times \text{거래승수} \times \text{계약 수} \end{aligned}$$

▶ **(옵션거래)** 옵션의 손익은 옵션의 유형(콜옵션/풋옵션), 거래 포지션(매수/매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이익,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손실**
-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이익,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손실**

※ 옵션 매수 시 지불한 옵션프리미엄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p>콜옵션 매입</p>		<p>콜옵션 매도</p>	
<p>풋옵션 매입</p>		<p>풋옵션 매도</p>	

Ⅲ.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가.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수수료는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이용안내 > 업무 이용안내 > 수수료안내)

Ⅳ.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장내파생거래 위험고지서]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고객의 투자 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 v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 v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 v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 v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v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1.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응증권의 대응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고객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3.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 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응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총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고객이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고객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고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고객이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고객이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9.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고객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고객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고객은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0.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 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11.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12.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3.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 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4.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15.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고객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 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고객께서는 **V-KOSPI200 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야간에는 유동성 등이 부족하여 **정규거래시간 대비 체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가격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9. 야간에는 **해외 금융시장 이벤트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정규거래시간 대비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 정규거래 마감업무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거래소가 야간거래시간 변경 또는 미개장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 관련 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1. 야간에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이 없어 이론가격 등 투자 참고지표가 제한되어 시장참가자의 투자전략 등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당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당사의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V.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가. 기본예탁금 및 파생상품 교육·모의거래 과정

▶ (기본예탁금 구분) 일반투자자(개인, 법인 모두)의 경우 선물(변동성지수선물 제외) 및 옵션매수시 1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그 외 모든 거래는 2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파생상품 교육 과정)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최저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모의거래 과정) 일반투자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최저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도시행일(19.12.02) 이전 종전 제도에 따라 파생상품교육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경우 현행 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거래경험 보유 여부 점검) 일반투자자는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경험이 있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매도 및 변동성지수선물을 포함한 모든 장내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 파생상품 거래 요건】

구분		최소 요건
기본예탁금**	선물(변동성지수 선물 제외), 옵션매수	1단계: 1,000만원 / 2단계: 1,500만원 / 3단계: 3,000만원
	그 외 모든거래	1단계: 2,000만원 / 2단계: 2,500만원 / 3단계: 5,000만원
사전교육*		1단계: 1시간 / 2단계: 3시간 / 3단계: 10시간
모의거래*		1단계: 3시간 / 2단계: 5시간 / 3단계: 10시간
변동성지수선물 및 옵션매도를 위한 거래경험*		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 일반개인투자자(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인투자자(개인투자자 중 전문투자자와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적용

** 금선물, 돈육선물은 50 만원

나. 수탁 및 매매제도

▶ (주문)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문에 조건(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 시 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

- 정규거래와 야간거래 간 호가의 효력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제출한 호가는 해당 야간거래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며 야간거래 종료 시까지 체결되지 않는 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야간 거래 시, 호가수량한도와 누적호가수량한도는 정규거래의 1/2 로 축소하여 적용되며 상품별 호가수량 한도와 누적호가수량한도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

* 매수지정호가 '1 단계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가는 원래 '1 단계 상한가+1 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1 단계 상한가'에 의제

☞ 가격제한폭이 2 단계로 확대될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를 "최우선매수호가(확대전 상한가)+1 틱"으로 재의제 후 호가 처리됨

* 직전체결가격이 '1 단계 상한가'이고, 최우선매수호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시장가호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1 단계 상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

☞ 가격제한폭이 2 단계로 확대되더라도 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

▶ (주문 입력 제한) 투자자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문별·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주문만 허용)

*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종목(가격제한폭이 다음 단계로 확대된 주식파생상품 종목 포함)에 대하여는 시장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 주문 제한

√ 단일가호가시간에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 (거래의 체결)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별경쟁거래방법(단일가거래*, 접속거래)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일가거래 : ① 최초약정가격(정규거래를 08:45에 개시하는 시장 : 정규거래 개시 전 15분간, 그 외 시장 : 정규거래 개시 전 30분간, 야간거래의 경우 개시전 10분간), ② 시장정지 또는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 ③ 최종약정가격(거래 종료 전 10분간)

- 다만,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거래 시간) 시장의 거래시간은 **정규거래시간(당일 08시 45분부터 당일 15시 45분까지)**과 **야간거래시간(전일 18시부터 당일 06시까지)**으로 구분되며 정규거래시간은 최종거래일의 도래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의 거래시간은 08:45~15:45입니다. (돈육선물은 10:15~15:45)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08:45~15:20(단, 변동성지수선물은 08:45~15:35), 금리상품 및 통화선물시장의 경우 08:45~11:30입니다. (단,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은 08:45~15:45, 통화옵션은 08:45~15:30, 금선물은 08:45~15:20, 돈육선물은 10:15~15:45)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거래시간은 해당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하며, 최종 거래일에는 선물스프레드 구성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합니다.
- ※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일) 시장의 거래일은 당일 야간거래시간 개시 시점부터 다음날 야간거래시간 개시 시점 전까지를 하나의 거래일로 봅니다. 야간거래의 경우, 야간거래 개시 시점이 속한 날이 정규거래의 휴장일이면 당일 야간거래는 개시하지 않습니다.

▶ (거래의 중단) 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됩니다. 다만, 야간거래시간에는 CB발동 기준이 되는 주가지수의 변동이 없으므로 CB발동에 따른 주식파생상품거래 중단 및 재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써,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8%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및 3단계(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정규거래 중 CB 3단계 발동으로 주식시장 거래 종결 시 당일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미 실시

☞ KRX300선물은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시장에서 CB 발동시,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써 사이드카(Side Car)***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코스닥15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코스닥150 수치가 직전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 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다. 위탁증거금 제도

▶ (기본예탁금)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상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게 사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됩니다.

▶ (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 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응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사전위탁증거금)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 (사후위탁증거금)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예탁현금에 가산하는 대응증권의 매도대금은 야간거래 장 개시 전에는 결제일이 도래한 매도대금과 결제일 도래 전일의 매도대금에 한정하여 예탁현금에 가산할 수 있지만 야간거래 장개시 후에는 매도시점과 무관하게 예탁현금에 대응증권매도대금을 더할 수 있습니다.

* 예탁된 현금과 대응증권의 대응가액 및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예탁 부과여부 판단 시점에 따른 추가위탁증거금 구분>

구분	추가예탁 부과여부 판단 시점	예탁 시한
위탁증거금 일별 추가예탁	장종료시점 기준 '예탁총액 < 유지위탁증거금' 또는 '예탁현금 < 유지현금예탁필요액'일 경우 추가예탁	부족액 발생일 다음 거래일의 12시 * 단, 회사는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위탁증거금 장중추가예탁	정규거래시간 중 매정각 (9시1분, 10시~14시, 15시는 제외) 시점 기준 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이상 변동시 '예탁총액 <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일 경우 추가예탁 * 장중 추가예탁증거금 제도는 파생상품 계좌 중 모든 위탁계좌에 적용합니다.	부족액 발생일의 장종료 시점* * 단, 회사는 위탁자 파락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호가접수시간의 개시 전까지 추가 예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에 대하여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부과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해야 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제출된 미체결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자의 신규거래 등의 위탁은 회사의 수탁거부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탁자에게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위탁자가 신규거래 등을 위탁할 경우 해당 거래는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로부터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받은 후에 미결제약정 해소 또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추가예탁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야간시간대엔 적용하지 않음)

√ 코스피200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이 6%일 경우,

* (상황 A) 9 시 1 분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3.5% 변동 :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미충족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미산출

* (상황 B) 10 시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4.8%(=6%*0.8) 이상 변동했다면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충족

- 위탁자 계좌별로 "예탁총액<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이면 장중추가예탁 부과대상에 해당

- "장중위탁증거금액-예탁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즉, 부족액) 이상을 회사가 정하는 시간 (당일 또는 익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 추가 예탁

- 장중 추가예탁 미이행시, 신규주문 및 증거금 증가주문에 대한 수탁이 거부됨

- 만약 전일 장종료후 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한 계좌가 금일 10 시에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하였고 12 시 회사의 반대거래에 의해 미결제약정이 해소되어 장중 추가위탁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 계좌에 대해서는 장중 추가예탁 해제 가능

<코스피 200 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 80% 이상 변동시 추가예탁 변동 예시>

구분	증거금	조치사항
9 시	예탁총액 2,500 만원	조치없음
9 시 1 분*	위탁증거금액 4,500 만원,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3,000 만원	추가예탁액 2,000 만원 부과 통지
9 시 30 분	고객이 500 만원 납입, 예탁총액 3,000 만원	조치없음
10 시*	위탁증거금액 4,000 만원,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2,800 만원	추가예탁 부과 해제 가능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시각(매 정각, 단 9 시는 9 시 1 분)

▶ (예탁불이행시 조치)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때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응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예탁시한까지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라. 정산·결제·인수도

(1)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 (일일정산)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하며, 이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는 당일차금*과 갹신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이 경우 야간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야간거래의 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해당 거래일의 약정가격과 해당 거래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과 해당 거래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설명서 2호 A4

(2026.05.15 개정)

▶ (최종결제)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하게 됩니다.

√ (현금 수수) 최종결제자금*을 수수

√ (기초자산 수수)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거래소 규정 참조)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 (옵션대금의 수수) 회사와 위탁자는 **옵션대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권리행사 신고)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20분 이내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의 종료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그 밖에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은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와 위탁자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 합니다.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 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3) 결제시한

▶ 회사와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통화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수수시한**으로 합니다.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갹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 지급액과 총 수령액의 차감액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

※ 위의 수수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마. 장내파생상품 안내

※ 장내파생상품 계약명세는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품별 자세한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 > KRX시장 > 시장안내 > 파생상품시장'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구분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주식선물
거래단위	선물가격 X 25만원	옵션가격 X 25만원	액면 1억원	1만달러	선물가격 X 10원
결제월·결제주 및 거래기간	3,6,9,12월 (최장 3년, 7개 결제월)	• 코스피200옵션 : 매월 (최장 3년, 11개 결제월) • 코스피200위클리옵션 : 매주 (최장 1주)	3,6,9,12월 (최장 6월, 2개 결제월)	• 1년이하 결제월: 매월 • 1년초과 결제월 : 3,6,9,12월 (최장3년, 20개 결제월)	3,6,9,12월 및 그밖의 월중 2개 (최장 1년, 6개 결제월)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피200옵션 :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주 월요일 ② 매주 목요일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제외*)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가격표시 방법	코스피200선물 수치(포인트)	프리미엄 (포인트)	액면 100원당 원화 (백분율방식)	US \$1당 원화 (원/달러)	주식선물가격(원)
최소 호가단위	0.05포인트	- 0.05포인트 (프리미엄 10이상) - 0.01포인트 (프리미엄 10미만)	3,5,10년물 : 0.01포인트 30년물 : 0.02포인트	0.1원	1원~1,000원 * 기초주권의 상장시장 및 호가가격의 수준에 따라 상이
최소가격 변동금액	12,500원 (0.05X25만원)	- 12,500원 (0.05X25만원) - 2,500원 (0.01X25만원)	3,5,10년물 : 10,000원 (0.01X0.01X1억원) 30년물 : 20,000원 (0.02X0.01X1억원)	1,000원 (0.1원/달러x 1만달러)	10원~10,000원 (1원~1,000원x10원)
일일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	±8%→±15%→±20% (정규거래)	±8%→±15%→±20%	±1.5%(3년물), ±1.8%(5년물), ±2.7%(10년물), ±3.9%(30년물)	±4.5%	±10%→±20%→±30%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의 가격변동률	±1%	±2%	±0.5%(3년물), ±0.9%(10년물) * 5년물, 30년물은 미적용	±1%	±3% 또는 ±6% * 기초주권마다 상이. 거래소규정 참조

* 실시간상·하한가의 범위 : 직전약정가격±가격변동폭

(☞ 가격변동폭은 각 상품별 가격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세한 산식은 거래소 규정 참조)

** 코스피 200 위클리옵션의 경우 코스피 200 옵션의 최종거래일에 해당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만기 위클리옵션은 상장되지 아니함

VI. 거래의 통지

- ▶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 일까지 통지합니다.
- ▶ (반기별 계좌잔액, 잔량현황 통지거래의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 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통지합니다.

※ 고객이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고객이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설명서 2호 A4
(2026.05.15 개정)

행사요건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 년(일부 자료는 5 년)동안 보관합니다.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행사요건) 고객님께서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금융상품)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요구 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요구가 가능합니다.
-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다. 청약철회권

-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Ⅷ. 기타

가. 과다호가 부담금 부과

- ▶ 고객이 코스피 200 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코스피 200 옵션거래(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코스피 200 위클리옵션 거래 포함)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동안 한국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한국거래소에 과다호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고객 계좌에서 과다호가 부담금을 출금하여 한국거래소에 납부하며, 과다호가 부담금 출금으로 인하여 해당계좌에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알고리즘거래계좌 한국거래소 신고

- ▶ 한국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해, 고객의 계좌가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계좌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계좌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합니다.
* 알고리즘거래 :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알고리즘)에 따라 투자판단, 주문(호가)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
- ▶ 알고리즘계좌로 미신고한 계좌에서 초당 2 회(증권사 주문시각 기준) 이상 주문제출 계좌 중, 장 종료 시점 기준으로 당일 호가건수 5 천건 이상 제출 시, 회사는 해당계좌가 알고리즘계좌가 아닌 사유를, 익일 장 종료 시까지 한국 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다.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장중 추가증거금 제도) 관련 주의사항

- ▶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 장중추가증거금액, 예탁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고, 거래소 규정에 따른 수탁의 거부를 적용합니다.

(단, 전산시스템의 환경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받기 전에 수탁의 거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에 관해서는 아래를 적용합니다.

① 장종료 이전

- 예탁총액이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증거금 산출변수(이하 '산출용 파라미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산출한 사전위탁증거금액(주문증거금은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부과해제 합니다.
- 예탁총액이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이하 '점검용 파라미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부과해제 합니다.
-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 부족액이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부과해제 하지 않습니다.

② 장종료 후

- 예탁총액이 산출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사전위탁증거금액(주문증거금은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부과해제 합니다. 단, 당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이하 '당일 장종료 시점기준 파라미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사전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기 전까지만 적용합니다.
-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 받는 위탁자가 당일 장종료 시점기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제 합니다.
-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 받는 위탁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부과해제 합니다.
- 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제 하지 않습니다.

▶ 증거금 산출변수의 적용은 아래를 따릅니다.

①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아래에 적용합니다.

- 직전 거래일에 발생한 예탁총액부족액, 예탁현금부족액의 해소여부 판별
- 반대거래시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의 판별
- 주문증거금 (단, 인출가능금액 계산시의 주문증거금은 산출용 파라미터를 적용)
- 위험노출액 한도 계산

② 산출용 파라미터를 아래에 적용합니다.

- 장중위탁증거금 산출
- 반대거래나 입금을 통한 위탁증거금 장중 추가예탁의 해소여부 판별
- 모든 계좌의 인출가능금액 계산

③ 점검용 파라미터를 아래에 적용합니다.

-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수신 받은 증거금 산출변수로 위탁증거금 장중 추가예탁의 해제여부를 판별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의 예탁시한은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한 날의 장 종료시점으로 합니다.

- ① 회사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 받는 계좌가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전위탁증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증거금 관련 주의사항

▶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계산시, 기초자산 및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종목간 미결제약정수량을 차감하지

설명서 2호 A4

(2026.05.15 개정)

아니하고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을 산출합니다.

▶ 장중선물순손실금액

-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종목과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종목을 동일한 종목으로 보지 않고, 이와 관련한 장중선물순손실금액도 산출하지 않습니다.

마. 선물옵션 대응증권 주의사항

▶ 증권계좌에 있는 대응증권을 선물옵션 계좌의 대응증권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증권 총수 대비 다음 한도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증거금30%이하징수 종목의 한도: 20%
- 증거금40%징수 종목의 한도: 10%
- 증거금50%징수 종목의 한도: 6%
- 증거금60%징수 종목의 한도: 4%
- 증거금100%징수 종목과 현금100%징수 종목의 한도: 0%
(증거금100%징수 종목과 현금100%징수 종목은 대응증권 지정이 불가합니다.)

▶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채권은 위 한도를 예외 적용합니다.

IX. 착오거래 구제제도 설명서

본 설명서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착오거래가 발생하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 81 조의 2 및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 24 조에 따라 착오거래가 구제된 경우 고객님의 체결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 구제근거

▶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1조의2에 따라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또는 투자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결제가 곤란하여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2. 구제요건

▶ 착오거래는 착오와 관련된 손실액, 착오거래의 약정가격 등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구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제방법

▶ 착오거래 구제 시, 해당 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은 세칙에서 정한 가격으로 정정되며 이 경우 착오상대방은 불리한 가격으로 가격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4. 구제결정시한

▶ 착오구제 여부는 일반적으로 착오신청일 당일 장 종료 후 20분 이내에 확정됩니다. 다만 거래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 상 필요한 경우 다음 거래일 장 종료 후 20분까지 구제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매매 시 유의사항

▶ 직전약정가격 등 예측가능한 통상의 시장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 착오구제로 인해 기

존의 약정가격이 정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착오자의 거래 상대방이 해당거래에 대한 반대매매를 할 경우, 해당 반대매매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착오거래의 가격이 정정되어 오히려 손실을 입으실 수 있으니 반대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거금 및 결제관련 유의사항

▶ 거래소에서 착오구제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장종료 후 결제금액 산출 포함)에도 착오상대방의 위험관리를 위해 해당 거래가 구제된 것으로 보고(체결가격을 잠정 구제가격으로 정정) 증거금 및 결제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당일 중 착오구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착오거래 미구제 시 유의사항

▶ 착오 발생일 착오구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익 거래일 착오구제를 구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착오자와 착오상대방은 원래의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정산된 금액을 수수합니다.

8. 시행일

▶ 착오거래 구제제도의 시행일은 2014년 9월 1일(월)입니다.

9. 착오거래 구제사례

▶ 아래의 사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제도 적용 시에는 결과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례는 착오자가 착오거래 구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습니다.

① (사례1) 선물시장에서 착오거래 구제 시

착오거래 구제가격은 일반적으로 착오발생 직전약정가격에서 전일 기초자산종가의 일정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직전 약정가격이 250p, 전일 코스피200 종가가 245p, 착오거래구제비율이 3%라면, 착오거래 구제가격은 $250 \pm 7.35p$ ($245p \times 3\%$)로 계산되어 257.35p 또는 242.65p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착오로 260.00p에 매수, 240.00p에 매도거래가 발생했다면, 해당 매수가격은 257.35p로 매도가격은 242.65p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상대방의 약정가격도 동일하게 정정됩니다.

② (사례2) 옵션시장에서 착오거래 구제 시

착오거래 구제가격은 일반적으로 착오발생 직전 기초자산가격에 해당가격의 일정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가격으로 기준으로 산출한 이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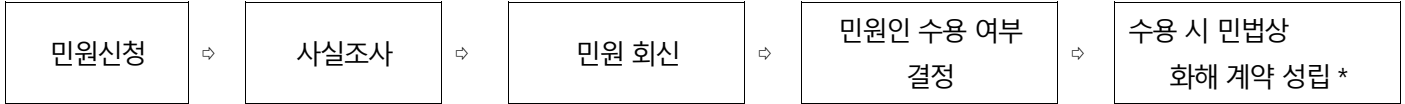
예를 들어 착오발생 직전 코스피200지수가 250p, 착오거래구제비율이 3%라면, 착오거래 구제가격은 코스피200지수가 $250 \pm 7.50p$ ($250p \times 3\%$)인 경우, 즉 코스피200지수가 257.50p 또는 242.50p인 경우 해당 종목의 이론가격으로 산출됩니다. 콜옵션 A종목의 경우 지수가 257.50p인 경우의 이론가격이 3.00p이고 지수가 242.50p인 경우의 이론가격이 1.00p인 상황에서, 착오로 4.00p에 매수, 0.50p에 매도거래가 발생했다면 해당 매수가격은 3.00p로, 매도가격은 1.00p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상대방의 약정가격도 동일하게 정정됩니다.

10. 반대매매 시 손실 사례

▶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직전약정가격이 250.00p였는데, 통상적인 시장가격에서 벗어난 260.00p에 매도거래가 체결되었다면 이 투자자는 빨리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 다소 불리한 가격인 259.00p에 반대매매(매수)하여 1p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체결된 260.00p 거래가 착오거래구제로 확정되어 가격이 257.35p로 정정된다면 아 투자자는 1p의 이익이 아닌 $1.65p (= 259.00p(\text{매수가격}) - 257.35p(\text{매도가격}))$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서 별도로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가 없으니 착오거래에 대한 반대매매 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가.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비고
전자민원접수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이용안내>고객센터/FAQ>고객의 소리
영업점민원창구	서면(민원신청서)	-
본사 민원담당부서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 FAX(02-3276-4332)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나.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연락처	바로 가기(인터넷)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한국거래소	02-1577-2172	(http://sims.krx.co.kr/p/Drct0201/)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 링크(http://www.fcsc.kr)(PC)

판매직원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한국투자증권 _____ PB센터(지점) (☎ _____) 직위: _____ 직원명 : _____ (서명)

◇ 일중매매거래(Day Trading)에 대한 위험고지 설명서 ◇

▣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동일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후 같은 날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같은 날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고객님께서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 일중매매는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일중매매거래는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수많은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 ▷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 잦은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으로 고객의 손실이 더 커지거나 이익 중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시스템트레이딩 위험고지 설명서 ◇

▣ "시스템트레이딩(System-trading)프로그램"이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정확한 이해 없이 시스템매매를 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하여 고객의 손실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 ▷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